
2018년
지역별 ·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

2019. 1.

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
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

순서

I. 산출 기준	1
II. 지역별 ·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	2
II-1. 전체 사건	2
II-2. 일반 사건	3
III. 용어 정의	4

I. 산출 기준

□ 산출 기준

- 본 통계 자료는 2018. 1. 1. ~ 2018. 12. 31.까지 접수된 사건 중 절차 참여 여부 확인까지 완료된 사건 기준
- 각 통계표상 표시된 지역은 의료기관의 소재지 기준이며, 기준 및 단위는 오른쪽 위에 표시함. 부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

- '-': 해당사항 없음 또는 발생하지 않음

- '일반 사건'은 피신청인에 대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묻는 사건에 대한 통계(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8항, 이하 의료분쟁조정법)이며, '전체 사건'은 위 일반 사건과 조정신청의 대상이 일부 요건*을 갖추어 절차가 바로 개시되는 사건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27조제9항)의 계수를 합친 통계임

*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Ⅱ. 지역별 ·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

Ⅱ-1. 전체 사건

(2018.1.1. ~ 2018.12.31.(접수일) 기준, 단위: 건, %)

구분		계	상급 종합 병원	종합 병원	병원	치과 병원	한방 병원	요양 병원	의원	치과 의원	한의원	약국	보건소	보건 의료원	보건 지소	조산원
계	개시	1,755	446	447	359	25	7	49	282	118	18	3	1	-	-	-
	각하	1,160	160	287	223	10	7	16	338	94	24	1	-	-	-	-
	개시율	(60.2)	(73.6)	(60.9)	(61.7)	(71.4)	(50.0)	(75.4)	(45.5)	(55.7)	(42.9)	(75.0)	(100.0)			
서울	개시	553	179	96	81	9	3	7	122	45	9	1	1	-	-	-
	각하	366	63	60	49	5	3	4	136	35	11	-	-	-	-	-
	개시율	(60.2)	(74.0)	(61.5)	(62.3)	(64.3)	(50.0)	(63.6)	(47.3)	(56.3)	(45.0)	(100.0)	(100.0)			
부산	개시	149	51	29	29	2	1	8	22	5	2	-	-	-	-	-
	각하	120	15	32	31	1	2	1	29	8	1	-	-	-	-	-
	개시율	(55.4)	(77.3)	(47.5)	(48.3)	(66.7)	(33.3)	(88.9)	(43.1)	(38.5)	(66.7)					
인천	개시	99	19	32	28	-	1	-	10	8	1	-	-	-	-	-
	각하	54	17	9	12	1	-	1	11	3	-	-	-	-	-	-
	개시율	(64.7)	(52.8)	(78.0)	(70.0)	(0.0)	(100.0)	(0.0)	(47.6)	(72.7)	(100.0)					
대구	개시	88	29	11	29	-	-	2	11	6	-	-	-	-	-	-
	각하	59	11	5	17	1	-	1	15	8	1	-	-	-	-	-
	개시율	(59.9)	(72.5)	(68.8)	(63.0)	(0.0)		(66.7)	(42.3)	(42.9)	(0.0)					
광주	개시	56	17	18	12	1	-	2	4	2	-	-	-	-	-	-
	각하	24	5	3	5	-	1	-	8	2	-	-	-	-	-	-
	개시율	(70.0)	(77.3)	(85.7)	(70.6)	(100.0)	(0.0)	(100.0)	(33.3)	(50.0)						
대전	개시	52	14	18	7	1	1	-	8	3	-	-	-	-	-	-
	각하	28	1	9	8	-	-	1	6	3	-	-	-	-	-	-
	개시율	(65.0)	(93.3)	(66.7)	(46.7)	(100.0)	(100.0)	(0.0)	(57.1)	(50.0)						
울산	개시	32	12	2	8	-	-	3	5	2	-	-	-	-	-	-
	각하	24	-	7	7	-	-	-	8	1	1	-	-	-	-	-
	개시율	(57.1)	(100.0)	(22.2)	(53.3)			(100.0)	(38.5)	(66.7)	(0.0)					
세종	개시	4	1	-	-	-	-	-	2	1	-	-	-	-	-	-
	각하	2	-	-	-	-	-	-	1	1	-	-	-	-	-	-
	개시율	(66.7)	(100.0)						(66.7)	(50.0)						
경기	개시	303	26	102	90	2	-	13	49	16	3	2	-	-	-	-
	각하	254	25	98	51	1	-	6	56	9	8	-	-	-	-	-
	개시율	(54.4)	(51.0)	(51.0)	(63.8)	(66.7)		(68.4)	(46.7)	(64.0)	(27.3)	(100.0)				
강원	개시	58	13	21	9	3	-	1	6	5	-	-	-	-	-	-
	각하	25	2	10	-	-	-	-	9	3	1	-	-	-	-	-
	개시율	(69.9)	(86.7)	(67.7)	(100.0)	(100.0)		(100.0)	(40.0)	(62.5)	(0.0)					
충북	개시	32	4	15	6	-	-	1	5	1	-	-	-	-	-	-
	각하	19	4	5	3	-	-	1	4	2	-	-	-	-	-	-
	개시율	(62.7)	(50.0)	(75.0)	(66.7)			(50.0)	(55.6)	(33.3)						
충남	개시	57	19	8	7	3	-	-	13	6	1	-	-	-	-	-
	각하	32	9	3	5	-	-	-	10	3	1	1	-	-	-	-
	개시율	(64.0)	(67.9)	(72.7)	(58.3)	(100.0)			(56.5)	(66.7)	(50.0)	(0.0)				
전북	개시	52	12	11	12	-	-	5	7	5	-	-	-	-	-	-
	각하	30	1	7	4	-	-	-	14	4	-	-	-	-	-	-
	개시율	(63.4)	(92.3)	(61.1)	(75.0)			(100.0)	(33.3)	(55.6)						
전남	개시	33	4	8	14	-	1	1	4	-	1	-	-	-	-	-
	각하	26	-	10	10	-	-	-	5	1	-	-	-	-	-	-
	개시율	(55.9)	(100.0)	(44.4)	(58.3)		(100.0)	(100.0)	(44.4)	(0.0)	(100.0)					
경북	개시	43	-	22	10	-	-	4	2	5	-	-	-	-	-	-
	각하	36	-	13	5	-	1	1	11	5	-	-	-	-	-	-
	개시율	(54.4)		(62.9)	(66.7)		(0.0)	(80.0)	(15.4)	(50.0)						
경남	개시	122	46	37	17	4	-	2	10	5	1	-	-	-	-	-
	각하	53	7	12	15	1	-	-	14	4	-	-	-	-	-	-
	개시율	(69.7)	(86.8)	(75.5)	(53.1)	(80.0)		(100.0)	(41.7)	(55.6)	(100.0)					
제주	개시	22	-	17	-	-	-	-	2	3	-	-	-	-	-	-
	각하	8	-	4	1	-	-	-	1	2	-	-	-	-	-	-
	개시율	(73.3)		(81.0)	(0.0)				(66.7)	(60.0)						

* 개시율: 개시건수 ÷ (개시건수 + 각하건수) × 100

II-2. 일반 사건

(2018.1.1. ~ 2018.12.31.(접수일) 기준, 단위: 건, %)

구분		계	상급 종합 병원	종합 병원	병원	치과 병원	한방 병원	요양 병원	의원	치과 의원	한의원	약국	보건소	보건 의료원	보건 지소	조산원
계	개시	1,165	195	253	282	25	7	13	252	118	17	3	-	-	-	-
	각하	1,160	160	287	223	10	7	16	338	94	24	1	-	-	-	-
	개시율	(50.1)	(54.9)	(46.9)	(55.8)	(71.4)	(50.0)	(44.8)	(42.7)	(55.7)	(41.5)	(75.0)	-	-	-	-
서울	개시	378	72	53	69	9	3	1	116	45	9	1	-	-	-	-
	각하	366	63	60	49	5	3	4	136	35	11	-	-	-	-	-
	개시율	(50.8)	(53.3)	(46.9)	(58.5)	(64.3)	(50.0)	(20.0)	(46.0)	(56.3)	(45.0)	(100.0)	-	-	-	-
부산	개시	87	23	16	23	2	1	-	16	5	1	-	-	-	-	-
	각하	120	15	32	31	1	2	1	29	8	1	-	-	-	-	-
	개시율	(42.0)	(60.5)	(33.3)	(42.6)	(66.7)	(33.3)	(0.0)	(35.6)	(38.5)	(50.0)	-	-	-	-	-
인천	개시	70	4	23	24	-	1	-	9	8	1	-	-	-	-	-
	각하	54	17	9	12	1	-	1	11	3	-	-	-	-	-	-
	개시율	(56.5)	(19.0)	(71.9)	(66.7)	(0.0)	(100.0)	(0.0)	(45.0)	(72.7)	(100.0)	-	-	-	-	-
대구	개시	47	9	5	17	-	-	2	8	6	-	-	-	-	-	-
	각하	59	11	5	17	1	-	1	15	8	1	-	-	-	-	-
	개시율	(44.3)	(45.0)	(50.0)	(50.0)	(0.0)	-	(66.7)	(34.8)	(42.9)	(0.0)	-	-	-	-	-
광주	개시	28	4	9	9	1	-	-	3	2	-	-	-	-	-	-
	각하	24	5	3	5	-	1	-	8	2	-	-	-	-	-	-
	개시율	(53.8)	(44.4)	(75.0)	(64.3)	(100.0)	(0.0)	-	(27.3)	(50.0)	-	-	-	-	-	-
대전	개시	38	10	9	7	1	1	-	7	3	-	-	-	-	-	-
	각하	28	1	9	8	-	-	1	6	3	-	-	-	-	-	-
	개시율	(57.6)	(90.9)	(50.0)	(46.7)	(100.0)	(100.0)	(0.0)	(53.8)	(50.0)	-	-	-	-	-	-
울산	개시	22	5	2	6	-	-	2	5	2	-	-	-	-	-	-
	각하	24	-	7	7	-	-	-	8	1	1	-	-	-	-	-
	개시율	(47.8)	(100.0)	(22.2)	(46.2)	-	-	(100.0)	(38.5)	(66.7)	(0.0)	-	-	-	-	-
세종	개시	4	1	-	-	-	-	-	2	1	-	-	-	-	-	-
	각하	2	-	-	-	-	-	-	1	1	-	-	-	-	-	-
	개시율	(66.7)	(100.0)	-	-	-	-	-	(66.7)	(50.0)	-	-	-	-	-	-
경기	개시	203	6	50	72	2	-	5	47	16	3	2	-	-	-	-
	각하	254	25	98	51	1	-	6	56	9	8	-	-	-	-	-
	개시율	(44.4)	(19.4)	(33.8)	(58.5)	(66.7)	-	(45.5)	(45.6)	(64.0)	(27.3)	(100.0)	-	-	-	-
강원	개시	35	2	14	5	3	-	-	6	5	-	-	-	-	-	-
	각하	25	2	10	-	-	-	-	9	3	1	-	-	-	-	-
	개시율	(58.3)	(50.0)	(58.3)	(100.0)	(100.0)	-	-	(40.0)	(62.5)	(0.0)	-	-	-	-	-
충북	개시	22	1	12	5	-	-	-	3	1	-	-	-	-	-	-
	각하	19	4	5	3	-	-	1	4	2	-	-	-	-	-	-
	개시율	(53.7)	(20.0)	(70.6)	(62.5)	-	-	(0.0)	(42.9)	(33.3)	-	-	-	-	-	-
충남	개시	46	15	4	6	3	-	-	11	6	1	-	-	-	-	-
	각하	32	9	3	5	-	-	-	10	3	1	1	-	-	-	-
	개시율	(59.0)	(62.5)	(57.1)	(54.5)	(100.0)	-	-	(52.4)	(66.7)	(50.0)	(0.0)	-	-	-	-
전북	개시	36	9	7	7	-	-	2	6	5	-	-	-	-	-	-
	각하	30	1	7	4	-	-	-	14	4	-	-	-	-	-	-
	개시율	(54.5)	(90.0)	(50.0)	(63.6)	-	-	(100.0)	(30.0)	(55.6)	-	-	-	-	-	-
전남	개시	22	3	2	11	-	1	-	4	-	1	-	-	-	-	-
	각하	26	-	10	10	-	-	-	5	1	-	-	-	-	-	-
	개시율	(45.8)	(100.0)	(16.7)	(52.4)	-	(100.0)	-	(44.4)	(0.0)	(100.0)	-	-	-	-	-
경북	개시	32	-	17	8	-	-	1	1	5	-	-	-	-	-	-
	각하	36	-	13	5	-	1	1	11	5	-	-	-	-	-	-
	개시율	(47.1)	-	(56.7)	(61.5)	-	(0.0)	(50.0)	(8.3)	(50.0)	-	-	-	-	-	-
경남	개시	82	31	20	13	4	-	-	8	5	1	-	-	-	-	-
	각하	53	7	12	15	1	-	-	14	4	-	-	-	-	-	-
	개시율	(60.7)	(81.6)	(62.5)	(46.4)	(80.0)	-	-	(36.4)	(55.6)	(100.0)	-	-	-	-	-
제주	개시	13	-	10	-	-	-	-	-	3	-	-	-	-	-	-
	각하	8	-	4	1	-	-	-	1	2	-	-	-	-	-	-
	개시율	(61.9)	-	(71.4)	(0.0)	-	-	-	(0.0)	(60.0)	-	-	-	-	-	-

* 개시율: 개시건수 ÷ (개시건수 + 각하건수) × 100

Ⅲ. 용어 정의

① 의료분쟁 관련 용어 정의

○ 조정

-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하도록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이끄는 절차를 말하며, 재판 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36조)

○ 중재

-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(私法) 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,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44조)

○ 조정 절차 개시

-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고,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조정 신청을 각하함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27조제8항)
- 다만, '16.11.30.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조정신청의 대상이 사망, 1개월 이상 의식 불명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1급의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에 조정절차는 개시됨

② 보건의료기관 종별 유형 정의

○ 상급종합병원

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
1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

2. 「의료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
3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·시설·장비 등을 갖추는 것
4.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(「의료법」 제3조의4제1항 및 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및 별표)

○ 종합병원

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함

1.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
2.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·외과·소아청소년과·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
3.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,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,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(「의료법」 제3조의3제1항)

○ 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치과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 중 주된 진료과목이 치과인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한방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 중 주된 진료과목이 한의과인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요양병원

- 30개 이상의 요양병상(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)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의원

-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)

○ 치과의원

- 치과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)

○ 한의원

-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)

○ 약국

-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[약국제제(藥局製劑)를 포함한다]를 하는 장소(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)를 말함. 다만, 의료기관의 조제실을 예외로 함(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)

○ 보건소(보건지소)

-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시·군·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행정기관으로서, 보건소의 지소를 보건지소라 함(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)

○ 보건의료원

- 보건소 중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말하며, 보건소 업무에 진료 및 입원기능을 특화한 것으로 주로 의료취약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여 설치·운영함(「지역보건법」 제8조)

○ 조산원

-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·해산부·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·상담을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)